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9 – 12호

「상주시 도시계획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5월 30일

상주시의회



「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현재 전국 곳곳에서는 동물화장시설 등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이 없어 인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우리시는 동물화장시설 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지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과의 분쟁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동물화장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규정(안 제18조의3)
-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
(동물화장시설, 동물건조장(乾燥葬)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·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

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[참조 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(전화 : 054-537-7841, FAX 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.sangjucounci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 주 소 :
 연락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 내용	비고